#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59

발의연월일: 2022. 11. 24.

발 의 자: 안민석 • 권인숙 • 김홍걸

도종환 • 문진석 • 민형배

서영석 · 조승래 · 조오섭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운영 사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

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 법률 제 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보통교부금의"를 "교부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 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	제12조(교부금의 보고)
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u>다음</u>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	<u>각 호의 사항을</u>
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	
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u>사항을</u>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
	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u>주요사항</u>
<u>&lt;신 설&gt;</u>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
	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
	<u>과</u>